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구현합니다

진정 접수 및 처리 절차

인권상담 	대면상담과 전화상담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없이 1331)
진정접수 	방문,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주소 100-842)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길 41 금세기 빌딩 7층 인권상담센터 팩스 02-2125-9811~2 / 이메일 hoso@humanrights.go.kr * 구금보호시설 수용자의 경우, 면전진정의 방법으로 접수 가능
사건조사 및 조정 	- 진정서 등을 바탕으로 예비조사를 통해 각하 · 이송 여부 판단 - 해당 관계인의 제출자료 확인, 실지조사 및 출석조사 * 정당한 이유없이 조사 거부시 과태료 부과
	-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진정사건을 조정위원회에 회부 가능 * 조정 및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 발휘
위원회 의결 	- 조사 내용을 심의하여 권고, 기각, 각하, 합의권고 등을 결정 - 필요한 구제조치 및 법령 · 제도 · 정책 · 관행의 시정 권고 -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징계 권고 -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사의뢰 또는 고발 -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를 요청 * 사실이 아니거나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각처리
당사자 통보	심의 · 의결 후, 진정인에게 사건처리결과통지서 송부

인권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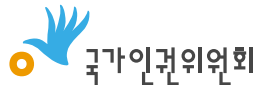
오시는 길

버스

간선	100, 1015, 140, 152, 202, 261, 470, 471, 472, 501, 701, N30 · N37(심야)
지선	7017, 7021
광역	2500, 9401, M4101, M4102, M4108, M5107, M5115, M5121
공항	6001, 6015
직행	1005-1, 1150, 5000, 5005, 5007, 5500, 5500-1, 5500-2, 7900, 8100, 8110, 8800, 8800전, 9000, 9001, 9003, 9300

지하철

- 2·3호선 을지로3가역 12번 출구, 도보 5분 거리
- 4호선 명동역 10번 출구, 도보 10분 거리



주소 04551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저동1가) 나리킴 저동빌딩 13층 홍보협력과
전화 02-2125-9872 · 국번 없이 1331 팩스 02-2125-0920 이메일 public@humanrights.go.kr
홈페이지 www.humanrights.go.kr

부산인권사무소	47606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0 국민연금회관 7층	전화 051-710-9710~6
광주인권사무소	61476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154-1 아모레퍼시픽 5층	전화 062-710-9710
대구인권사무소	41939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648 호수빌딩 16층	전화 053-212-7000~6
대전인권사무소	35262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48번길 30 KT탄방타워 13층	전화 042-472-9038~45

[illegible]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파리원칙」에 의거해 설립되었습니다

파리원칙

- 국가인권기구의 기능, 지위, 구성 등에 관한 기준을 명시하여 오늘날 세계 각국의 국가인권기구 설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 1991년 '제 1차 국가인권기구 국제워크숍'에서 제정된 후,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회의'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같은 해 12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습니다.

주요내용

1. 국가인권기구는 인권의 신장과 보호의 권한을 부여받아 가능한 한 광범위한 직무가 인정되어야 하며 그 구성과 권한은 헌법 또는 법률에서 정해져야 한다.
2. 국가인권기구는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고,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적·예산적 자원 등이 확보되어야 한다.
3. 국가인권기구는 주어진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안을 독자적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심사하고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어야 하며 운영방식을 자유로이 정할 수 있어야 한다.
4. 국가인권기구는 개별적인 인권상황에 관한 고발과 진정을 청문하고 심리하는 준사법적 권한을 보유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는
「파리원칙」에 의거하여
2001년 11월 25일 설립되었습니다.

“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 -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을 전담하는 국가기구입니다

비전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사명

모든 영역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구현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성격



인권 전담 국가기구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정한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



독립기구

입법·사법·행정부 3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
독립기구로 업무 수행 및 직무의 독립성과 다양성 보장



준사법기구

개별적인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법령, 제도, 관행 등의 개선 권고



준국제기구

국가의 법·제도 등이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도록 권고하고, 유엔 및 해외
국가인권기구와 교류·협력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 합니다

인권 정책

- 인권 관련 법령·정책·관행의 조사·연구 및 개선의 권고 또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에 대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법원(또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의견을 제출합니다.
- 국제인권조약 가입과 조약의 이행에 관한 권고와 의견을 표명합니다.

조사 · 구제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및 구급·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이를 조사하고 구제합니다.
-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에 의해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이에 대한 조사와 구제를 합니다.
- ※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 차별·연령 차별 시정기구입니다.
-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의 성희롱에 대한 전담조사구제를 담당합니다.

교육 · 홍보

- 인권의식을 향상시키고 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펼칩니다.
- 출판, 문화 콘텐츠 개발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인권의식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 인권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인권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협력

- 국내 인권단체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구제가 필요한 인권 현장의 상황을 파악하고 자문을 받는 한편, 인권단체 공동협력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국제사회의 인권 향상에 기여하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등 국제기구와 전세계 국가인권기구 등과의 교류·협력에 힘쓰고 있습니다.

